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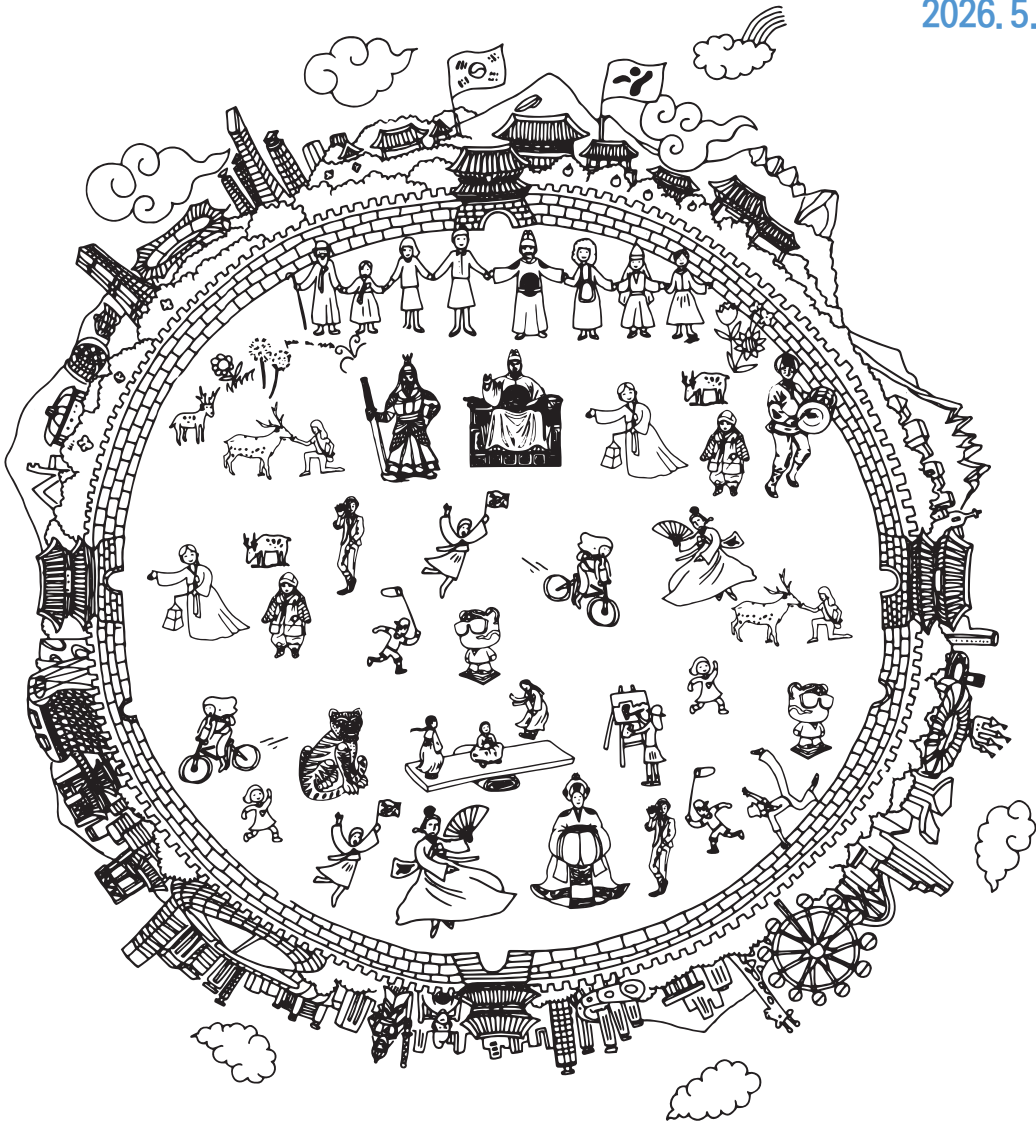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49호
2026. 5. 18.(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10103호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1010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10105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0106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10107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10108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10109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10110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101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10112호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0113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10114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1011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10116호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30
제101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10118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1011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10120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1012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101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1012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3호****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을 “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에 관해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확장 가능성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골목길재생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함(제5조제2항제8호).
- 나.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을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기존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산업에 국한되었던 관광자원의 범위를 '안보' 영역까지 확대하여, 서울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여, 시장이 안보와 연계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5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학생”으로,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을 “대학생”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을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으로,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 법 제2조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제1항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학자금대출”로,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졸업생 등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2.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따른 서울지역”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대표 등”을 “대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가 '23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제1조).
- 나. 이자 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제2조).
- 다.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함(제3조, 제7조 및 제10조).
- 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의 이자지원 대상 자격 기준을 신설함(제3조).
- 마.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6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 을 “유족 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내에서 지원대상자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 삭제(제3조1항제6호 삭제).
- 나.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지원사업 대상자와 일치(제4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7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제8조제2호”를 “제8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창업예정자가 창업 초기 선제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창업예정자에 대한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 지원 근거 마련(제3조 단서)
- 나.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조항 신설(제8조제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8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역세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역세권: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 노선에 설치된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나. 간선도로 교차지역: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도로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지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세권 내”를 “역세권 등의 범위 내”로 한다.

제4장(제1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운영기준

제13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간선도로 교차지역은 교통은 편리하지만 역세권 대비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있었으며, 주택 수요가 높아 고밀 개발 필요성에 따라 기존 역세권 내에 한정되었던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촉진 및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그간 시장 방침으로 규정하여 운영중이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역세권’의 명칭을 ‘역세권 등’으로 변경하고, 역세권 등의 세부 유형에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역’을 추가함(제2조제1호 및 제4조).
- 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함(제1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09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건물이 형태·규모상 2개 이상의 동(棟)으로 분리된 구조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은 각 동의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 전체에 표시할 수 있는 입체형간판의 총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시 시장은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건축 설계의 다양화로 건축물대장상 1개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형상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형태의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 조례는 실제 외형과 상관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준으로 건물 상단의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을 일괄 제한하고 있음.
- 구조가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 가능 벽면 이용 간판 수량을 예외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2개 이상의 동으로 분리된 건물 각 동의 상단 중 2면에 하나의 벽면 이용 입체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총 설치 가능 개수를 6개로 제한함(제4조제1항제3호가목).
- 나. 동 분리 구조의 세부적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수립할 수 있게 함(제4조제1항제3호가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0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을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결혼이민자”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결혼이민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년 1월 「모자보건법」의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임신부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으로 지원 내용이 구체화되었음.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 해소에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57.8%)을 차지하는 만큼,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돕도록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는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임신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등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임신부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의3).
- 나.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를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 법 제7조”를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7조”로,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를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시설주관기관”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으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을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사전 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을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교육 실시)”를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간”을 “발간하고 홍보”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편의시설의 관리·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전 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
- 나.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시설주 협조 의무를 강화함(제3조 및 제4조).
- 다.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6조).
- 라.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제7조).
- 마.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정비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함(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2호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강공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실제 도로와 한강공원 등에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운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마련(제5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3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제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계	258	14	69	175
서울특별시봉사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문화상	14	—	14	—
서울특별시환경상	21	1	5	15
서울특별시복지상	16	2	5	9
서울특별시 어린이및청소년상	94	3	19	72
서울특별시청년상	20	1	3	1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6	1	2	3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6	1	2	3
서울특별시건축상	31	1	5	25
서울특별시건설상	16	1	5	10
서울특별시안전상	7	1	2	4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6	1	2	3

※ 봉사상의 경우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선정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과학기술 인식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과학기술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시민상 수상대상자에 ‘과학기술상’ 을 신설함(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서울특별시시민상 시상 방법 및 시기에 ‘과학기술상’ 을 신설함(제4조제1항제12호 신설).
- 다.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에 ‘과학기술상’ 6명(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을 신설함(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4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시 외국인을 고려하여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긴급상황 발생 및 안전안내 등 재난문자 발송 시 외국인에 대한 정보안내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조례에 외국인을 위한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을 고려해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안 작성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편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차체 결함,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등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 이용편의 증진과 여가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5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음.
- 이처럼 대규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이에 현행 조례에 미비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불편이 발생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공자전거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3제4항 신설).
- 나. 보상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함(제12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6호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전 컨설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행정감사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컨설팅 대상기관) 사전컨설팅 대상기관은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4조(사전컨설팅 대상업무)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업무에서 제외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 수사,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 신청기관이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거나 단순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및 신청기관의 내부문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
4. 이미 처분이나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 그 밖에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는 등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

제5조(사전컨설팅 신청과 이송)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에 자체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신청받은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위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결과를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의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 ①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서의 장(이하 “인·허가 등 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감사위원장에게 신청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 등 신청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를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 등 신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를 반려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한다)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한다)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사전컨설팅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신청서 및 자료 보완, 전문가 자문, 법령해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여 의결된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컨설팅 이행결과의 제출) 제8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컨설팅 효력) 공무원 등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1조(사전컨설팅 자문) ① 감사위원장은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때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사전컨설팅의 자문에 응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허가등 건명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허가 등 신청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규모·복합 행정사무가 증가하고 계약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 지적·처벌 중심의 감사만으로는 행정의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움.
- 사전컨설팅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사전컨설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 및 제2조)
- 나. 사전컨설팅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 규정(제3조 및 제4조)
- 다. 사전컨설팅 신청과 이송 절차 규정(제5조)
- 라. 민원인의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 규정(제6조)
- 마. 사전컨설팅 실시 및 결과 통보에 대해 규정(제7조 및 제8조)
- 바.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제출 및 효력에 대해 규정(제9조 및 제10조) 사. 사전컨설팅 자문에 대해 규정(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

제4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순위: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의서 징구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시, 준공까지 4년 이상 소요되어 구역 내 세입자로부터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기대.

2. 주요내용

- 가. 정비계획의 입안요청과 입안제안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제9조의2, 제10조)
- 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세입자를 추가하고, 공급순위를 정함(제4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8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운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 등을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대해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7조의2제1항 신설).
- 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제7조의2제2항 신설).
- 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제14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1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3호까지의” 를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으로 한다.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공동위원회의 구성) 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구에서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던 자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세입자

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44조의4제3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로
한다.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3제1항의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용적률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부지는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건축물은 $(1+1.2\alpha) \times$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에 따른 용적률로 한다. 여기서 α 란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동이용시설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관리지역 외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2.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6.2.27.)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의 위치, 지역, 입주시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철거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대상 개정(제30조제2항제1호)
- 나.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근거 신설(제30조의7)
-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를 추가하고, 공급순위를 정함(제40조)
- 라.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시 기준 개정(제44조의4제3항)
- 마.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제50조의2)
- 바. 사업시행구역 외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 시 특례 기준 신설(제50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20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2. 강북등발전계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①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강북등발전계정) ①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강북등발전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 ② 강북등발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로·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로 강북등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3.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다른계정으로의 전출
4. 강북등발전계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강북등발전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강북등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등발전계정 신설(제5조~제7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제8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21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여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제17조제10호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7조 중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2호) 중 “영 제12조” 를 “영 제1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감사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감사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상 근거 마련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책임 강화(제4조 및 제5조)
- 나.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제7조)
- 다. 형사 소송비 지원 및 수사기관 의견 제출 제도 신설(제7조의2)
- 라. 재난·안전 분야 적극행정 사후 추인 등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권한 확대(제8조)
- 마. 감사위원장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신설(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123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김성보 인

2026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9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규명령(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는 약칭 규정을 명확히 정비(제2조 및 제4조)
-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음식점영업’을 추가함(제2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